
입 법 정 보

2018-17호



목 차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4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6
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6
4.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7
5.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
6.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9
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
9.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3
12.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3.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5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5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7
1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8
1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8
2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9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19
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0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5.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2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3
29.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24
3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5
3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5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6
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7
3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8
3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0
37.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0
3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1
39.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1
40.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2
41.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2
4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5
4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6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7
4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8
4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38
5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9
5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0
5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1
5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2
54. 일몰규제 정비에 관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42
5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43
5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4
5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5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6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7
6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8
61.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8
62.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50
6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1
6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1
6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2
6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2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3
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4
6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54
7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54
7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55
7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57
7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8
7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9
7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1

정부입법 예고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17.
- 마감일자 : 2018. 10. 29.

○ 배출시설 자가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명확히 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 연료 첨가제와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장비 등 중요사항의 변경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환경기술인 교육을 대도시시장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자가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지시나 간섭 금지 (안 제39조 제3항 신설, 제91조 제2의6호 신설)

1)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경우, 측정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간섭으로 측정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2) 이에 대기배출시설사업자가 자가측정업무를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주체 명확화(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있으나, 신고를

받은 시·군·구 외 지역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령 해석상 행정처분의 주체가 모호한 문제점이 있음.

- 2) 이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근거를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안 제48조의5 신설)

- 1) 행정안전부는 각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을 법령에 근거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현재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Korea Emission and Noise Certification Information System, KENCIS)의 근거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함.

라. 자동차 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등 중요 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부여(안 제74조의2 제2항 신설, 제74조의2 제3~4항, 제74조의3, 제91조 개정)

- 1) 검사원의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마.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외에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7조제1항 개정)

-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이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지역조례로 설정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도시시장의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함.

바.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말소 등에 관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83조제2항 신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조에 의해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정보 제공요청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와 자치행정의 저해요소로 작용

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이에 시 도지사는 배출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9. 17. • 마감일자 : 2018. 10. 29.
- 특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개정 「특허법」(법률 제 15582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38조)
 -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 나. 특허법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삭제(안 제120조의3)
 - 특허법 개정사항(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 반영을 위해 현행 규정 삭제함.

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9. 17. • 마감일자 : 2018. 10. 29.
-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조공학사에 대한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8. 12.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 등 보조공학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시 신고자의 성명·주소, 피신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침해행위·피해사실의 내용 및 입증자료 제출(안 제4조의2 신설)
- 나.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시정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며,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안 제4조의3제1항 ~ 제2항 신설)
- 다.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 혹은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현장 확인 가능(안 제4조의3제3항 ~ 제4항 신설)
- 라.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전문가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음(안 제4조의4 신설)
- 마.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하여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음(안 제4조의5 신설)
- 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부터 공표까지 절차의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함(안 제4조의6 신설)
- 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절차 진행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과 대리권의 범위를 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 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또는 자료의 미제출, 허위제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8조의2 신설)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9. 17.
- 마감일자 : 2018. 10. 29.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규정이 신설(법률 제15648호, 2018.6.12. 개정,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고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2항 개정)
-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19조의3 신설)
-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대상자 고지의무,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납부의무 등 규정 (안 제19조의 4 신설)

5.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18.
- 마감일자 : 2018. 10. 29.

- 수도권사업자가 수도권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수도권법(법률 제15193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제60조의2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안 제61조의2, 별표6)
 - 수도권사업자의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 등 마련을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6.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9. 18.

● 마감일자 : 2018. 10. 29.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신설(3년) 및 위험평가 대상에 수산물 및 그 생산 환경을 추가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18.6.12. 공포)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및 수산물 위험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행 수산물에 한정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대상을 법률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된 어장·용수·자재 등을 추가하여 명확화(안 제8조)
- 나.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수행하는 업무 범위 등의 공지방법을 고시하던 것에서 관보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1조)
- 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절차를 중요 및 경미한 변경사항별 신고·수리 절차로 규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사후관리를 개선(안 제11조의2, 별지 제1~4호서식, 제16조)
- 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3년)이 신설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처리절차, 재지정 신청·처리절차를 마련(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 마. 수산물 위험평가·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위험평가 대상에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 또는 어업연구기술사업소 등을 추가(안 제14조)
- 바. 유해물질 실태조사 대상에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을 명시함(안 제15조)

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9. 18.
- 마감일자 : 2018. 10. 29.

○ 최근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신규 반영된 전자테이블게임의 규격 기준 및 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재 카지노 영업준칙 고시의 법령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등 응시자에게 불합리하고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텡스 시험 제도 변경(' 18.5월 제248회 정기시험부터 최고점수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 점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

아울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생 편의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인증표시를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등 규정에 전자테이블 게임 포함 (안 제33조제1항 개정)
- 나.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관련 고시에 대한 법령상 위임규정 마련(안 제36조제2항 신설)
-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를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안 제51조제4항 신설)
-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개정)
- 마. 텡스 시험제도 변경(' 18.5월)에 따라 관광종사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정비(안 별표 15 개정)
- 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중 해당기간 계속하여 종사하여야 하는 조건 삭제(안 별표 16 개정)
- 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보완, 인증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19. ● 마감일자 : 2018. 10. 29.
- 인구 50만 명 이상에 도달된 화성시(69만명), 김해시(55만명)를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기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시에 편입된 지역(舊 마산시·진해시·청원군)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안 제54조제2호)
 - 1)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엄격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도달된 화성시(69만명)와 김해시(55만명)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기 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시에 편입된 지역(舊 마산시·진해시·청원군)을 포함시킴

9.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9. 18. ● 마감일자 : 2018. 10. 29.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 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9조 삭제)
 -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 “제5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4조제2호 삭제)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9. 19.
- 마감일자 : 2018. 10. 29.
- 최근 개정된(' 18.2.2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그간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경영정보에 ‘임야’를 추가하고 관련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부칙을 개정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 19.1.1.로 명시
- 주요내용
 - 가. 신규 등록대상이 되는 ‘임야’ 범위 및 ‘임업경영정보’ 구체화(안 제2조 및 별표1)
 - 1) (대상) 단기임산물·임목생산에 이용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 2) (정보) 임야소재지·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임야에 설치한 시설현황, 임산물·임목의 품목 및 재배면적, 산지소유자, 산림경영계획 인가정보 등
 - 나. 임업정보 등록에 관한 담당기관 및 권한 구체화(안 제22조제1항)
 - 1) ~임업정보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등록정보의 정정·말소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이 담당하도록 명시
 - 다. 농업인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항목 명확화(별표1)
 - 1) 공동경영주 등록기준 보완, 농산물 유통항목 등록절차 개선 등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9. 19.

● 마감일자 : 2018. 10. 29.

- 최근 개정된(' 18.2.2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그간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경영정보에 ‘임야’를 추가하고 관련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부칙을 개정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 19.1.1.로 명시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 임업경영정보 추가(안 제 2조제1항)

- 1) 「임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독립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 정보’

나. 임업정보 등록업무 등의 처리기관 등(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 3·4, 제5조, 제6조)

- 1) 임업정보 등록신청, 변경등록, 등록정보 정정·말소 및 이의신청, 조사원 관리기관으로 ‘지방산림청장’을 추가하고, 업무별 처리절차 명시

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업무 확대(안 제3조제5항)

- 1) 직권으로만 발급하도록 했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보완

라.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부’ 작성기준 보완(안 제3조제4항)

- 1) 행정효율 향상 등을 위해 ‘농업경영주’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작성해 오던 기존 업무처리 요청에 대한 근거 기준 마련

마. 임업경영정보 추가 등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

- 1) 임업정보 등록업무(등록·확인서·직권정정·이의신청) 관련 서식 신설 및 개정
- 2) 농업인 작성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신청서 작성방법 명확화 등

12.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19. • 마감일자 : 2018. 10. 10.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관련 항공보안법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 10.24. 공포, 2018. 10. 25.시행)에 따라 법령 미비로 인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 법제처 하위법령 제때마련 시스템 대상 목록에 포함
- 주요내용
 - 가.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변경(안 제21조 별표 사목)
 - 나.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성능 인증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추가(안 제21조 별표 아목)

1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19. • 마감일자 : 2018. 10. 29.
- 2017. 11.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 기준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보 연계를 통하여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상 관련 사업의 효율성·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 채수탁자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 해당 기관에 대하여 소득·재산·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1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20.
- 마감일자 : 2018. 10. 30.

○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안 제6조제2항)

- 1)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인용조문을 ‘법 제8조제3항제7호’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
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안 제10조)

-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 (2018.6.12.공포, 법률 제15678호)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20.
- 마감일자 : 2018. 10. 30.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임에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산업단지 준치시설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6.12.공포, 법률 제15679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설치 부담액의 범위 구체화(안 제15조의4제2항 신설)

- 1) 산단의 개발행위 승인권자는 산업단지관리권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기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25%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를 정함

나.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시설부담금이 면제되는 존치시설물 명시 (안 제31조제7항 및 제8항)

1)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용도별 가중치’, ‘부담률’, ‘지역감면율’을 명확히 규정

2)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공익시설 등에 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 취지와 존치시설 소유자의 신뢰보호 필요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을 개정전과 동일하게 유지

다. 산업시설용지 우선 선정기준에 고용창출 우수기업도 추가(안 제42조의3제3항)

1)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용지 신규 분양시 신규채용 우수기업 또는 청년고용우수기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함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8. 20.

● 마감일자 : 2018. 10. 1.

○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마련 (안 제10조의2)

1) 계약기간, 사용료 등 부지사용계약시 주요 기준을 정하고, 부지사용계약 체결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 부지사용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 안내 방법 등을 규정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9. 20.

• 마감일자 : 2018. 10. 30.

-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규정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영업 정지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 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4조)

- 1)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4항 제1호에서 영업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를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

나. 조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3)

- 1) 사업자가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1천만 원에서 ①5천만 원, ②3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누적횟수별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 2) 임직원에게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다.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3)

- 1)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해 100만원 한도의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라.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규정 개정(안 제42조)

- 1)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규정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개정

1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0. 31.

-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17.12.13.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 명확화(안 제13조의2)

- 1)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험·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일부 시설 외에는 대부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어 정도관리 대상 시설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2)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시험실 및 장비를 갖추어 시험·검사를 하는 시설을 정도관리 대상으로 정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안 제17조)

- 1)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함.

다.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대상에 대도시 시장을 추가함(안 제17조의2)

라. 측정대행 계약내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별표 3)

1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1. 1.

- 모바일 랜덤채팅앱이 성매매, 청소년 조건만남, 약물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의 주요 경로가 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년보호를 위한 랜덤채팅앱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보완(안 별표2 제2호 하목 개정)

1)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2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0. 3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8호, 2018. 3.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6 제2호나목 및 다목)

1) 과태료 부과요건 중 명확하지 않은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는 것으로 구체화시킴.

2)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 함.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0. 31.

○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관리비 등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 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구분점포 성립에 필

요한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용부분의 변경 및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분양자의 최초 관리 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 신설과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 신설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0. 31.
- 담배사업법에 따른 신고사항(제조업 양수·도, 판매업 휴·폐업, 가격 신고)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위해 관리·감독 기관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하고, 수제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며,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 소비자대상 판촉행위 및 소매인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하위법령으로 운영중인 소매인 우선지정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 기관을 실제 관리·감독기관으로 조정하고, 그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 또는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문이 상충되므로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0. 13.
-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 제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자 처벌 강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 부당요금 수취 운수종사자 제재 실효성 확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743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으로 규정
- 나.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간 설정
- 다. 제62조제2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유가보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자격의 취소여부 및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라. 법 개정에 따른 운송사업자 등의 의무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1. 1.

-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교통사고 유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등록관청의 지정 공영차고지 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 내 전세버스 밤샘주차 허용(안 별표3, 별표5)
 - 1)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도시미관 저해, 교통사고 유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가 등록관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한 지정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25.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0. 11.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비율,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8년까지의 기간으로 강화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50퍼센트로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이면 3년,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면 4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이면 6년, 70퍼센트 미만이면 8년으로 함.
 - 나.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이면 3년, 70퍼센트 미만이면 4년으로 하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이면 1년 6개월,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면 2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이면 3년, 70퍼센트 미만이면 4년으로 함.

2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0. 31.
- 철도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은 철도보안·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철도특별사법경찰 대장에게 위임함(안 제62조제2항제4호)
- 나. 교통안전공단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도의 업무를 위탁함(안 제63조 제1항제1의5호)
- 다.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안 제64조 별표 6)
 - 1)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책임자 및 철도안전운행관리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2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0. 31.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알선시 중개물건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개선하는 등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20호 및 제20호의2 서식)
- 나.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법이 개정('15.7.24)되어 폐지되었음에도 현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20호의2 서식)

2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0. 31.

- 현행법령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년10월1일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 시행되나, 현역병과 동일하게 21개월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경우 현행법령상 20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하여 병역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병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단축 가능하도록 복무기간 단축범위를 4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37조 제2항)

29.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0. 31.

○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피감독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감사·감독기관의 공직자를 지원하거나 공식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감독기관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금품등 제공에 해당함을 명시(안 제2조)

- 1) 금품등의 종류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등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포함하여 수수나 제공이 금지되는 것임을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사·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거부 조치 및 과잉의전 제공 금지등(안 제9조의2 신설)

- 1)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하여야 함.
- 2)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3)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

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해외출장 예산 지원요구 금지(안 제11조)

- 1)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민간부문에 대한 부당한 알선·청탁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함

3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9. 21.

● 마감일자 : 2018. 10. 31.

-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대학이 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학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이 폐쇄된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점·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학이 폐쇄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3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28.

● 마감일자 : 2018. 11. 7.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내용(안 제2조의2 신설)

- 1) 법 제2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사항, 구성, 운영 방안(안 제3조의2 ~ 제3조의5 신설)

- 1)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을 정함
- 2)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9. 28.

• 마감일자 : 2018. 11. 7.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필요시 연 1회 이상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고자 함. 제품명, 원재료명 등을 허위로 품목제조신고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간주 제도 도입(안 제6조)

- 1)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반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2) 약국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판매자 관리가 가능한 영업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 3)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확대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대가 기대됨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상향 입법, 추가 조사·평가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안 제22조)

- 1) GMP를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으나, 2020년 전면 의무화를 대비해 상향입법하고, 현재는 1년마다 GMP 준수여부를 정기평가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 등 문제업소는 필요시 추가로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정기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동적인 GMP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다.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하거나 검사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47조)

- 1)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 미비
- 2) 식품위생법에서는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9. 28.
- 마감일자 : 2018. 11. 7.

○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확대(10만원 추가 및 사용기간 1년 확대) 및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급여 규정 확대(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안 제23조 제1항)

나.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급여 범위(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발급대상 확대(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다. 지원금액 단태아 50만→60만원/ 쌍태아 90→100만원 등 인상 (안 제23조 제4항)

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을 급여 실시 여부 및 국민행복카드(이용권) 사용기간 확대(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1년

까지) (안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마. 1세 아동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용을 현행 성인의 70%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20%로 완화(안 별표2 제1호 나목)

3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9. 28. • 마감일자 : 2018. 11. 7.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 지급 규정 일부개정과 장애인보장구의 체계적 관리 및 보청기의 처방 검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의 지급 등에 대한 규정정리 (안 제24조 제1항 내지 제5항)
 - 나. 급여비용 청구서류에 장애인보장구에 표시된 표준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을 추가(안 제26조제2항 제3호, 제26조제4항에 제3호, 별표 7)
 - 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 지급에 대한 위탁 관련 법령 용어 개정(안 제64조제3항 및 제4항)
 - 라. 보장구 사후관리 기준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7,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3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28. • 마감일자 : 2018. 11. 7.
-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폐차·말소 등록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과태료부과처분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서 제외(안 제7조)
- 1)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나,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여 과태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고자 함
- 나.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
- 1)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 다.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안 별표 1)
- 1)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 ‘종합검사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하여 정기검사 없이 바로 종합검사가 실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라.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안 별표 2)
- 1)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하여는 사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마. 전조등 검사방법 개정내용을 별지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전조등 주행빔(상향등) 대신 변환빔(하향등) 검사로 개선 추진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바.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 별지 제6호서식)
- 1) 유의사항 1. 중 “같은 법 제81조제2호”를 “같은 법 제81조제22호”로 오타 수정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3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28.
- 마감일자 : 2018. 11. 7.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것과는 달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가중처벌 도입(안 별표 1)
 - 1) 영업정지 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것과는 달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처벌을 도입하고자 함

37.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28.
- 마감일자 : 2018. 11. 7.
-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별 세부평가기준을 통폐합하고 용어를 정비 함으로써 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국토부장관이 계획수립권자의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토계획평가기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4개 평가기준으로 통폐합하여 개선 (안 제8조의2제1항)
 - 나. 계획수립권자가 통보받은 국토계획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안 제8조의4제7항,제8항)
 -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명칭 변경, 요청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함(안 제8조 별표)

3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0. 1.
- 마감일자 : 2018. 11. 1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564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9.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0. 2.
- 마감일자 : 2018. 11. 12.
- 정부합동 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15338호)」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중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행정조사정비과제 후속조치에 따라 행정조사 근거를 법령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 개정)
 - 1) 정부합동 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예정에 따라 전환대상 품목 업계에서 현행 규정에 따른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업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 나.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위임에 대한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안 제13조제1항 개정)
 - 1) 행정조사정비과제 후속조치에 따라 현재 식약처 고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화장품 협회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보고할 수 있도록 위탁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40.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0. 2. ● 마감일자 : 2018. 11. 12.
-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소요경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소요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 2)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하도록 하고,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사무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개정)
 -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조 개정)
 -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함.(제14조 신설)

41.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0. 2. ● 마감일자 : 2018. 11. 12.
-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소요경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소요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신설)
- 2)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함.(제7조의4 신설)
 - ①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②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3)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시 수익계약을 할 수 있는 기부채납 재산의 범위를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 또는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으로 함.(제7조의5 신설)
- 4)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일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거나 갖추 예정인 병원으로 함.(제7조의6 신설)
 - ①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신청서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 ②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등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5) 치매안심병원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과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7 신설)

6)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등 시설기준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기준을 정함.(제8조 개정)

4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2.

• 마감일자 : 2018. 11. 12.

○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건축설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일상생활을 반영한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함이 원칙이나, 현행 규정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건축물만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2.1억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바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 시 가격입찰의 전면배제가 필요하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여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처리결과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확대 (안 제17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이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설계비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적용대상 확대

나. 사전검토 결과 처리방향 통지 의무화 (안 제20조 제3항)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

4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10. 2. ● 마감일자 : 2018. 11. 12.
-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여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교육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4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2. ● 마감일자 : 2018. 11. 12.
-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기타 민원 사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 확인방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 내용에 포함된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결과가 안전운전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하고 경찰

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46조의3, 별표 16 제4호).

- 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교육사실을 증명함(안 별지 제28호의4서식)
- 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사무 처리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및 서식을 신설(안 제83조의3, 별지 제 71호의 2서식)
- 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출(제시)만을 규정하고 있는 6종의 관련 서식상에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일제 정비(안 별지 제42호 서식, 제42호의2서식, 제59호서식, 제64호서식, 제65호서식, 제144호의2서식)

4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0. 4.
- 마감일자 : 2018. 10. 10.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가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구분되도록 개선됨과 관련,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개선사항을 반영(안 제3조, 제3조의 2, 제6조 등)

-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어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하고 대상 사업 규모에 대하여 규정(안 별표 1의2)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13조 등)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0. 4.
 - 마감일자 : 2018. 11. 3.
-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제18조의12)
- 나.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중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별표1)

4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0. 5.
 - 마감일자 : 2018. 11. 14.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폐패널의 재활용 가능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개정(안 별표4, 별표4의3)
- 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태양광 폐패널의 세부분류를 명확히 하도록 세부분류를 개정하는 한편, 각각 가능한 재활용 유

형을 명시하여 적법한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개정(안 별표7)

- 1) 전기차 폐배터리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0. 5.
- 마감일자 : 2018. 11. 14.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제품군 분류 변경 및 회수·재활용기준 비용을 재산정하는 한편,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하고, 이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하며,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을 국제 환경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0. 5.
- 마감일자 : 2018. 11. 14.

-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역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시 검토항목을 개선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 증가 등 강우시 하수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은 물론, 강우로 인한 미처리 하수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법률에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운영중인 대행계약 해지 등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계약 체결의 절차·방법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조항을 마련하여 상속·합병 등에 따른 前 영업자의 영업실적 불인정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10. 5.

● 마감일자 : 2018. 11. 14.

○ 청년, 귀산촌인 등의 창업을 통한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 독립가의 유형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영독립가의 요건완화 및 법인독립가의 유형 추가 신설(안 제3조)

1) 소규모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영독립가’의 요건을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제1호 다목)

2) 산림경영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산촌인들이 법인을 조직하여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독립가’의 유형을 기존 30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100헥타르 이상인 법인 외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중에서 1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5헥타르인 법인을 추가하여 신설(제2호)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포장규격 개선(안 제17조의8)

1) 생산자 등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던 것을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상자·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제1항)

2) 제1항에 따른 직육면체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이도록 하던 것을 상자·용기에 붙이도록 개선(제3항)

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의 일부에 대한 한국임업진흥원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

- 1) 산림청장의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업무에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업무 중 공개모집·운영·평가에 관한 업무를 신설 (제4항 제3호)

5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0. 5.
- 마감일자 : 2018. 11. 14.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 신설)

- 1)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 ~ 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2) 2종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인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원 ~ 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3)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상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

에서 부담하도록 함.

5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5.

● 마감일자 : 2018. 11. 14.

○ “신혼·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복주택 공급 비율 유연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의2 신설, 별표4 개정)

1)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

2) 공급물량의 30퍼센트는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나.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안 별표4, 5, 6 개정)

1)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 부여

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유연화 등(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개정)

라. 용어순화 및 미미사항 정비 등(안 제14조, 제23조, 별표 4 개정)

5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0. 8.

• 마감일자 : 2018. 11. 19.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위탁하려는 경우 검사위탁계약서 제출 없이도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권자가 영업 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범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축산물의 영업 상속시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확인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고 이를 신고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
- 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 시험·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신고 신청 서류에서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안 별표 10)
- 다. 신고관청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 업종별 시설기준 중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 부담을 해소함.(안 별표 10)

54.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10. 8.

• 마감일자 : 2018. 11. 19.

-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시행규칙의 규제를 일부 개선하거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일몰도래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검정기관의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 요건 개선(안 제10조)

-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경우 검정기관 지정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모든 가축에 적용하는 시설·장비 예시로 젖소 검정성적 분석에만 필요한 유량계는 삭제함

나.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완화(안 제46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시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완화하고, 유통자와 유통업체, 판매자와 판매업체를 각각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중복 작성 부담을 줄임.

5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10. 8.
- 마감일자 : 2018. 11. 19.

- 부당한 특약 등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이익 침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부당한 특약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등을 금지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1)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체결시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부가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부당한 특약 등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안 제28조의3 신설, 안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

- 1)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부당한 특약 등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8.

• 마감일자 : 2018. 11. 19.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18.6.12.)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신기술의 지정대상,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경쟁력 강화 및 물류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안 시행령 제47조 신설)

- 물류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 운송·보관·하역 및 부가가치 창출하는 가공·조립·판매·정보통신 등에 관한 기술을 물류신기술이라 하고,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시 기술의 내용·국내외 활용가능성 등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

나. 물류신기술의 지정 절차(안 시행령 제48조 신설)

- 물류신기술 지정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물류신기술 심사 시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물류신기술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물류신기술 지정·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함을 규정함

다. 물류신기술의 지정(안 시행령 제49조 신설)

-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갖추고, 국가물류체계에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물류신기술로 지정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물류신기술로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증서를 발급토록 규정함

라. 물류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안 시행령 제50조 신설)

- 물류신기술의 개발·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 공공기관 구매권고, 입찰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지정된 물류신기술을 관리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신기술 활용실적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

마. 물류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안 시행령 제51조 신설)

- 물류신기술 보호기간을 신기술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물류신기술 업무의 위탁(안 시행령 제52조 신설)

- 물류신기술정보의 수집·분석, 지정 및 보호·활용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5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8.

● 마감일자 : 2018. 11. 19.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18.6.12.)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서 및 지정 증서의 서식, 심사비용의 산출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경쟁력 강화 및 물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안 제17조 및 제21호서식)

- 물류신기술 지정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나. 물류신기술의 심사비용 산출기준(안 제18조 및 별표3)

- 물류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을 마련함

다. 물류신기술의 지정증서(안 제19조, 제22호서식 및 제23호서식)

- 물류신기술지정증서 및 물류신기술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라.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안 제20조, 제24호서식 및 제25호서식)

- 물류신기술개발자의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 제출 서식과 물류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서식을 마련하고,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에 첨부할 서류를 제시함

마. 물류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안 제21조 및 제26호서식)

- 물류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0. 10.

• 마감일자 : 2018. 11. 19.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기준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정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규정 도입(안 제20조)

- 해양심층수처리수를 6개월마다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질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규정 삭제(안 제21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2조)

마.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조건을 규정(안 제22조의2)

-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품질관리인 준용규정(안 제23조의2)

- 법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품질관리인에 관한 자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사.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및 제조업과 관련한 시도지사 위임사무를 규정(안 제45조)

- 수입 해양심층수처리수 검사,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자가 수출

시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증명서류 접수 및 처리 사항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함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0. 10.

• 마감일자 : 2018. 11. 19.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수입업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의2)

- 제2조에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그 밖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를 규정

나. 해양심층수 관련업 신고민원 처리기한 규정(안 제17조, 제29조)

-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사업승계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영업승계의 신고수리 처리기한을 3일로 정함

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유통기한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안 제31조, 제34조의2~4)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안 제34조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유통기한 신설함(안 제34조의3, 제34조의3)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을 별도로 규정함(안제31조)

라.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양심층수처리수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수입업에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5)

6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10.

• 마감일자 : 2018. 10. 30.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차량내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경보장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의 체형 증가를 반영한 좌석기준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탑승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좌석 기준 보완(안 제25조, 제98조)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좌석간 거리 및 등받이 높이를 현재 어린이 체형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어린이확인정보장치 기준 도입(안 제53조의4)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차실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 종료 후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자동차 뒤쪽에 설치된 어린이 확인정보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미하차 어린이를 최종확인하도록 하는 어린이확인정보장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함

61.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10.

• 마감일자 : 2018. 11. 19.

-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성능등급의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 정기점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8조 신설)

-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점검대상 철도시설의 위치 명칭, 현장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나.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기술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31조, 제32조 신설)
 -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따라 4~6년마다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정밀진단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다.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의 기준 마련(안 제34조 신설)
 - 교량받침의 파손, 레일의 좌굴(挫屈) 및 절손(切損), 전차선 탈락 등을 철도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 라.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성능등급 기준 마련(안 제35조 신설)
 - 철도시설관리자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종합성능에 대한 등급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마.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안 제26조 신설)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 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가 완료되는 다음 해 부터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 바.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업무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1,500만 원 ~ 1억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을 위반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지연기간에 따라 100 ~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62.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10. 10.
- 마감일자 : 2018. 11. 19.

○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 됨에 따라, 정기점검 지침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 이력정보의 항목, 철도시설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 공표, 철도시설 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관리(안 제10조 신설)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제원 등 속성정보, 정기점검 성능평가 결과 등 상태 정보, 보수보강 일시 비용 인력 및 고장 기능장애 등 이력정보를 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보존하도록 함

나. 긴급점검의 실시 등(안 제11조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의 목적 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하고,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 평가 절차(안 제12조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의 안전성 및 이용편의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의 항목 기준 등이 포함된 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평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2주 전까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평가계획, 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안 제13조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점검, 정밀진단,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법률의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안 제14조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철도시설에 긴급한 보수 보강, 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6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11.

● 마감일자 : 2018. 11. 20.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8.9.21)’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확인(안 제24조)

- 조합설립 시 제출한 도로설치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건축 심의 내용에 가로구역 요건 충족여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6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11.

● 마감일자 : 2018. 11. 20.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8.9.21)’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추가(안 제2조)

- 조합설립 시 도로 요건 미충족 구간에 대해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으로 인정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추가(안 제9조)

-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가로구역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추가

6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11.

● 마감일자 : 2018. 11. 20.

-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안전점검 실시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굴착깊이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가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나.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등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부적인 굴착구간은 굴착깊이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제1호)
- 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검토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추가함(안 제17조제2항)
- 라.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별표 1)

6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0. 11.

● 마감일자 : 2018. 11. 20.

-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안전점검 대상인 전기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규격을 규정하여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 (안 별표 3)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0. 11. ● 마감일자 : 2018. 11. 20.

-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근로자도 보험료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시행령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 현재 해당 사업의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저임금 근로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가능 사업 범위 확대(시행령 제45조제1항)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산업재보험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 제공요청 대상 자료 범위의 추가(시행령 제54조의2)
- 정확한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소멸 및 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활근로 참여자 및 주택건설업자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 고용보험법과의 과태료 부과 기준 일원화(안 별표2)
-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각종 신고는 동일 서식에 내용이 유사하므로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른 신고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용보험법령 상 기준으로 일치시킴

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0. 11. • 마감일자 : 2018. 11. 20.
-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0. 12. • 마감일자 : 2018. 11. 21.
- 출입검사의 목적으로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을 명시하고 온천법의 공동급수 및 과태료에 대해서 일몰해제 적용하며, 온천법이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과 인용하고 있는 용어가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률 제명을 반영함.
- 주요내용
 - 가. 출입검사의 목적으로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을 명시
 - 나. 온천법의 공동급수 및 과태료에 대해서 일몰해제 적용
 - 다. 온천법이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과 인용하고 있는 용어가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률 제명을 반영

7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0. 12. • 마감일자 : 2018. 11. 21.
- 현행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영업장의 분리에 관한 규정과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음식물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14)

- 1) 서로 다른 영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도록 한 것을 구획 또는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2) 제과점 영업자가 같은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 구역 5킬로미터 이내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재사용 범위 명확화(안 별표 17)

- 1) 현행 식품접객업소에서 재사용이 불가한 음식물의 범위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에서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한 음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7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0. 12.
- 마감일자 : 2018. 12. 11.

-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범위 및 내용,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부당한 표시·광고 등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적용 범위(안 제2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식품등의 명칭·종류, 등급·품질·영양, 영업소 명칭, 상표, 유통기한·산란일 등)을 정함

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내용(안 제3조)

-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8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세부 내용과 자연상태의 식품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을 정함

다.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안 제4조)

-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

라.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안 제5조)

- 심의할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는 심의관리자 1명과 전문가 1명 이상의 전담인력과 전담체계, 수수료를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도록 요건을 마련함

마. 표시 또는 광고 이의신청(안 제6조)

- 자율심의기구 심의 결과 불복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의신청할 경우의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

바. 교육 및 홍보 위탁(안 제7조)

-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나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1)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연간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정함
- 2)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마련
-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위반 사실을 공토하도록 함

아.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15조)

- 시험결과 검토 등 실증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6조)

- 영양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광고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7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0. 12.

● 마감일자 : 2018. 12. 11.

○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 실증의 대상·자료의 요건·제출방법, 소비자 교육 또는 홍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시사항 등(안 제2조)

- 자사제조용 등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사항,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사항을 마련

나.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식품등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표시의무자를 정하고 이들이 표시할 때 표시장소·글씨크기 등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

다.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안 제5조 및 제6조)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하여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 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과 그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라. 광고의 기준(안 제7조)

-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마.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안 제8조)

- 시험결과, 조사결과 등 실증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안 제9조)

부터 제13조까지)

- 1) 심의대상은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함
- 2)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경우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경우 10만원으로 함
- 3) 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교육 및 홍보의 내용(안 제14조까지)

- 식품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광고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등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안 제15조)

-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않은 식품등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대상으로 정함

자.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안 제16조)

-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 2) 의무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을 정하고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7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12.
- 마감일자 : 2018. 11. 21.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마감재료의 기준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안 제8조제1항)

- 2개소의 직통계단이 상호간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화재 시 2개소의 직통계단 모두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직통계단 간 이격하여야 할 최소 기준을 신설

나. 방화구획 설치 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

-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던 1층과 2층을 층간 방화구획 대상으로 포함하고, 필로티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닫힘 규정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제1호)

-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방화문은 방화구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연기 또는 불꽃 감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

라. 방화댐퍼의 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제3호)

- 방화댐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 화재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에 대하여 주·야간에 식별이 가능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바. 외벽마감재료 기준 강화(안 제24조)

-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의 특성 별로 적용되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제도 도입(안 제26조)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사용토록 함

아. 기타 법령 정비(안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5조 등)

-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7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12.
- 마감일자 : 2018. 11. 21.

○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도를 개선하고, 직통계단 설치 및 마감재료 기준 개선 등 화재안전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건축물의 구조·화재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지·관리가 미비한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리중간보고서 작성 시기 추가(안 제19조제3항)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주요 공정을 추가

나.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 개선(안 제19조의2제1항)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착공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함

다. 건축물의 보행거리 기준 적용 방법 개선(안 제34조제1항)

- 그간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행거리 기준을 2개소의 직통계단에 적용토록 하여 계단이 건축물 중앙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던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함

라. 용어의 명확화(안 제38조, 제56조)

- 그간 건축법령에서 ‘관람석’으로 표현하였던 사항을 기준의 취지에 따라 ‘관람실’로 변경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자 함

마. 방화구획 기준 완화 대상 추가(안 제46조제2항)

- 층간 방화구획을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층과 2층을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경우(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는 당해 구획 내에서 방화구획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61조제1항)

-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는 모두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토록 함

사.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61조제2항)

-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필로티에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로 확대

아. 자동방화셔터의 근거 규정 추가(안 제64조)

- 자동방화셔터의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 조항을 마련

자.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안 별표15)

- 그간 화재안전, 구조안전, 유지·관리 미비 시 시가표준액의 3%만을 부과토록 하여 왔으나, 이를 10%로 상향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7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12.
- 마감일자 : 2018. 11. 21.

○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공급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청약시장이 양극화 되고 있음에 따라 청약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의 미계약 주택이나 기타 지역에서의 미분양 주택의 발생에 대비하여 투명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향후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판명될 시 공급계약 취소되는 주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실수요자 및 사업주체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대원의 배우자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 부여
(안 제2조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 1) 세대주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등)를 세대원에 포함하여 청약자격 부여
- 2) 무주택세대구성원(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세대에 속한 자(민영주택)를 다르게 하고 있으나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을 통일성 있게 규정할 필요

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안 제2조제3호의3, 안 제28조제1항, 제5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해당 권리를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아니함
- 다.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5항)
 - 성년자에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에 한정하여 성년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 라. 미계약분·미분양분 대비 사전 신청접수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허용(안 제19조제5항)
 - 1) 미계약 또는 미분양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허용
 -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발생한 미계약분 주택이 20세대 이상(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20세대 미만도 포함)은 당첨자와 계약한 이후 공급신청 접수하는 경우도 인터넷으로 접수하도록 함
- 마.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제28조제8항)
 - 1) 민영주택 공급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우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잔여 주택에 대하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함
 - 2)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하되,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벌 시행
- 바.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안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순위내 경쟁발생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 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 사. 신흥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 신흥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 아. 불법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안 제47조의3)
- 1) 계약취소된 주택이 30세대 이상이면 일반청약 절차를 따르고,
3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2)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 지역내의 여러 주택단지의 계약
취소된 주택(20세대 미만 포함)을 분기별로 통합하여 일괄 공급
하게 할 수 있음
- 자.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안 제58조)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
한으로 현행 유지하고, 위축지역 3개월 및 기타 비수도권 6개월로
청약 자격 제한기간 완화